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6. 17.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 5. 24. 마포구청장(맑은환경과)
- 나. 회부일자 : 2024. 5. 28.
- 다. 상정일자 : 제268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2024. 6. 17.)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승수 의원

가. 제정이유

조례 제정 목적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명시하고 구생활환경과 환경오염 범위에 일조,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관리가 필요한 사항 등을 추가하여 구민의 환경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조례 제정 목적을 수정함.(안 제1조)
- 2) 생활환경 정의에 “일조,” “인공조명”,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환경오염 정의에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포함시킴.(안 제4조제3호 및 제4호)
- 3) 조례 제명 및 기타 조항의 자구수정 및 경미한 사항 수정
 -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 →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 기본 조례」

3. 검토의견 [신준호 전문위원]

가. 개정조례안의 개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의 정합성을 이루고, 국민의 환경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일조, 화학물질, 인공조명에 따른 빛공해를 생활환경과 환경오염 범위에 추가하는 것임.

나. 주요 개정 조문

- 안 제1조 목적은 상위법령을 명확히 하여 조례 입법 동기를 명확히 하였음.
- 안 제4조제3호 및 제4호 정의는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뜻하는 "생활환경"의 정의에 일조 및 인공조명, 화학물질을 추가하고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인 "환경오염" 정의에 일조방해 및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추가하였음.

다.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등 상위법령에서 다루고 있는 생활환경 및 환경오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 분쟁을 예방하는 등 국민의 환경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임.
- "생활환경" 정의에 일조,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에 포함하는 것은 「건축법」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²⁾, 「화학물질관리법」³⁾에서 각 요소들에 관하여 구체적

1)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사람이 자연과 어우러져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관리되어야 하는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이므로 환경정책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차원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이며,

- "환경오염"에 일조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를 포함하는 것은 현행 법령 및 조례상 환경오염이란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어떠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일조방해 및 빛공해는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환경피해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기정 "환경오염"의 정의와 명확히 부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법에서 개인의 재산적·인격적 이익이 침해된다는 측면에서 환경오염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체계상 어긋남이 없고 마포구 환경정책의 기본방향 수립에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 기타 제명 및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음.

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 3) 「화학물질관리법」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관 계 법 령]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